NYC: 사망후

사망진단서 신청절차 안내서

뉴욕시 보건정신위생부

nyc.gov/health/deathcertificates



COVID-19 자원

- NYC: nyc.gov/covid19 또는 nyc.gov/ health/coronavirus를 방문하십시오.
- NYS: covid19vaccine.health.ny.gov를 방문하십시오.
- 보건자원 서비스국: hrsa.gov를 방문하여
 "COVID-19 resources" (COVID-19
 리소스)를 찾아보십시오.
- 미국질병통제예방센터(Centers for Disease Control and Prevention): cdc.gov/ coronavirus를 방문하십시오.
- 미국 국립 보건원: nih.gov 를방문하여
 "coronavirus" (코로나바이러스)를
 찾아보십시오.
- NYC의 법률서비스 액세스 라인: legalservicesnyc.org/what-we-do/ covid-resources를 방문하거나 917-661-4500번으로 전화하십시오.
- 미국연방재난관리청: fema.gov를 방문하여
 "COVID-19 funeral assistance"
 (COVID-19 장례 지원)을 찾아보십시오.

일반 자원

NYC Well

 200개 이상의 언어로 연중무휴로로 교육받은 상담사로부터 무료 비밀보장 정신건강 지원을 받으려면 888-692-9355번으로 전화하거나 65173으로 "WELL"이라는 텍스트를 보내거나 nyc.gov/nycwell에서 채팅하십시오. 사망진단서는 사람의 사망에 관한 공식 법적 문서입니다. 이 브로셔는 뉴욕 시민들이 뉴욕시 (NYC)에서 사망진단서와 서비스를 쉽게 받을수 있도록 하는 정보를 제공합니다.

사망 신고

뉴욕 시에서 발생한 사망은 의료 전문가가 사망 시점으로부터 24시간 이내에 뉴욕시 보건정신위 생부(보건부)에 보고해야 합니다.

사망진단서 등록

고인(사망한 사람)의 의료 서비스 제공자는 고인 의 사망 사실과 사인을 뉴욕시 보건부에 보고합 니다.

장의사 또는 의료 기관은 사망자의 개인 정보(생 년월일, 통상적인 거주지 주소, 직업)와 최종 처분 (예: 장례식, 화장, 매장)을 뉴욕시 보건부에 보고 합니다.

NYC 보건부는 사망을 등록하고 사망진단서의 인 증 사본을 보고하는 장의사 또는 자격이 있는 당 사자*(예: 배우자, 가정 파트너, 부모, 자녀, 형제자 매, 처분을 관리하는 사람)의 요청에 따라 발급합 니다.

사망진단서 요청

뉴욕시 보건부는 뉴욕에서 발생한 사망에 대해 사망진단서를 발급합니다.

언제?

사망 진단서는 사망 신고가 접수되고 뉴욕 보건 부에 등록되면 발급됩니다.

누가?

자격이 있는 당사자들은 언제든지 사망진단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장의사는 사망일로부터 1년 까지 사망진단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COVID-19로 인해 뉴욕시 사망진단서의 대면 요청은 긴급 신청으로 제한됩니다. 긴급 상황에서는 nycdohvr@health.nyc.gov로 필수기록서비스 사무실(Office of Vital Records Services)에 이메일을 보내거나 311번으로 전화하실 수 있습니다. 긴급하지 않은 경우에는 사망 진단서를 온라인 또는 우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온라인: 공식 온라인 중요 기록을 위한 공인 자원이자 가장 빠른 신청 방법인 vitalcheck.com를 방문하십시오.
- 우편으로:
 - nyc.gov/health를 방문하여 "death certificate application" (사망진단서 신청서)를 찾아 다운로드한 후 작성, 서명 및 공증을 받으십시오.
 - 이메일 주소를 반드시 기입하고 표시된 대로 본인 확인 및 서명과 함께 주소를 기록하고 우표를 동봉하십시오.
 - 수수료를 계산하고 지불 금액을 동봉합니다(우편 요청의 경우 사본당 15달러, "NYC 보건정신위생부"로 지불한 우편환 또는 수표. 현금은 받지 않습니다).

지원이 필요하면 **311** 또는 뉴욕시 교외의 경우 212-639-9675번로 전화하거나 **nycdohvr**@ **health.nyc.gov**로 이메일을 보내십시오.

참고 사항: 최종 처분이 결정되지 않았더라도 사망진단서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진단서 상세 내역이 보고되면 중간 또는 임시 처분으로 등록할 수 있습니다.

장례식장 찾아보기

장례식장은 어떻게 찾습니까?

- 뉴욕주(NYS) 장의사협회는
 nysfda.org/index.php/news-events/
 find-a-funeral-home에서 허가된 장례식장
 목록을 제공합니다.
- NYS 장례의식 진행국은 health.ny.gov/ professionals/funeral_director/ reports/openfirms_alpha에서 허가된 장례담당 회사 목록을 제공합니다.

장례 비용을 지불할 여유가 없고 사망진단 서가 필요한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장례식장을 이용하지 않은 경우에도 해당 당사자*가 사망진단서를 주문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311번으로 전화하거나 nyc.gov/health를 방문하여 "death certificates" (사망진단서)를 찾아보십시오.

*자격 있는 당사자: 배우자, 가정 파트너, 부모, 자녀, 형제자매, 조부모, 손자, 조카/손녀, 이모/삼촌, 증손자, 고조손자, 조카/손녀/손주, 사망진단서에 기재된 정보 제공자 또는 처분권자. 위에 기재되지 않은 경우 사망진단서를 발급받을 권리에 대한 서류를 작성해야 합니다. 문의 사항이 있으면 311번으로 전화하십시오.

일반 자원 (계속)

NYC 보건부

 사망진단서를 요청 또는 수정하려면 nyc.gov/health/deathcertificates를 방문하십시오.

뉴욕 시 인적자원관리국

사회서비스부: nyc.gov 를방문하여
 "burial assistance" (장례 지원)을
 찾아보십시오.

뉴욕 시 재향군인 서비스부

- 재향군인회 청구에 관한 정보에 대해서는 nyc.gov/vetclaims를 방문하십시오.
- 재향군인의 장례나 장례 준비에 대한 정보는 nyc.gov/vetburials를 방문하십시오.

사회보장국

 ssa.gov를 방문하여 "survivors benefits" (유족 혜택) 및 "burial funds" (장례 자금)을 찾아보십시오.

일반 뉴욕시 정부 정보

- **311**번 또는 212-639-9675번으로 전화하십시오.
- NYC 직원 혜택:
 - 지방 의회 37: 212-815-1000;
 dc37.net
 - NYC 이연보상제도: 212-306-7760;
 nyc.gov/olr
 - NYC 종업원퇴직제도: 347-643-3000;
 nycers.org

Korean 3.22